

제 23 장 예 외

제 23.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 내지 제4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및 제6장 내지 제9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¹⁾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 23.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1) 제23.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²⁾

제 23.3 조 과 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및 제2.12조(배기량 기준 세제)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12.2조(내국민 대우), 제13.2조(내국민 대우) 및 제13.5조(국경간 무역)제1항은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11장(투자) 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11.3조(내국민 대우) · 제11.4조(최혜국 대우), 제12.2조(내국민 대우) · 제12.3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제13.2조(내국민 대우) · 제13.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11.8조(이행 요건)의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6. 가.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는 수용 또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 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 나. 제11.6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1.6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6조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11.16조(중재 청구 제기)제2항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1.16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그리고
- 2)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재무부 차관보(조세정책)

7.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또는

나.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

제 23.4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